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가합550057 판결 [주식 등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정산애강

피고1. 튜브다산벤처펀드투자조합

2. 튜브마이더스벤처투자조합

3.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4. 스틱투자조합17호

5.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6. 주식회사 A

7. B

변론 종결2016. 6. 24.

판결 선고2016. 7.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튜브다산벤처펀드투자조합,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각자

217,403,604원, 피고 튜브마이더스벤처투자조합,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각자

1,536,318,807원, 피고 스틱투자조합17호,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각자 2,855,234,009원, 피고 주식회사 A, B은 각 111,117,3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9.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 1) 원고는 건설자재 및 비철금속 관련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2) 피고 튜브다산벤처펀드투자조합(이하 '피고 튜브다산'이라 한다), 튜브마이더스벤처투자조합(이하 '피고 튜브마이더스'라 한다), 스틱투자조합17호(이하 '피고 스틱17호'라 한다)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피고 에이치비엔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이치비'라 한다)는 그 중 피고 튜브다산, 튜브마이더스의 업무집행조합원이고, 피고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스틱인베스트먼트'라 한다)는 피고 스틱17호의 업무집행조합원이다.
- 3) 주식회사 일렘테크놀로지(이하 '대상회사'라 한다)는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대상회사의 폴리부텐-1 생산

폴리부텐-1(PolyButene-1)은 난방·급탕용 내열파이프를 만들기 위한 주원료가 되는 석유화학제품으로, 대상회사는 2003. 8. 30. '고입체 규칙성 폴리부텐-1 중합체 및 이의 고활성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고 폴리부텐-1 제조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폴리부텐-1 제조공정을 개발하여 2006. 5.부터 2008. 8.까지는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를 설치·가동하였다가, 2009. 6.경에는 생산규모를 늘려서 여수산업단지 내에 신공장을 건설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09. 9. 11.경 피고 튜브다산, 튜브마이더스, 스틱17호,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B(이하 '피고 튜브다산 등'이라 통칭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상회사 발행의 주식 및 전환사채를 대금 합계 32,207,941,440원(= 27,815,941,440원 + 4,392,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스티크17호	액면가10,000원의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	1,100,000주	16,104,000,000
튜브다산	100,001주	1,464,014,640	
튜브마이더스	600,000주	8,784,000,000	
A	49,995주	731,926,800	
B	50,000주	732,000,000	
합계	1,899,996주	27,815,941,440	

스티크17호	제3회 무보증 전환사채	2,000,000,000원 (200,000주)	2,928,000,000
튜브마이더스	1,000,000,000원 (100,000주)	1,464,000,000	
합계	3,000,000,000원 (300,000주)	4,392,000,000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제5조(매도인들의 진술 및 보증)

(1) 매도인 공개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매도인들은 연대하여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및 거래종결일 현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이 모두 정확하고 진실함을 기술하고 보증한다. 매도인들은 공개목록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그 기재된 바가 정확하고 진실됨을 진술하며, 위 한도 내에서는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중략)

7) 재무제표 매도인은 대상회사에 관한 2009. 6. 30. 기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의 가결산 자료(이하 '재무제표'로 총칭)의 사본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였다. 각 재무제표는 대상회사의 장부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각 재무제표 해당시점의 또는 해당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자본 및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대상회사에는, 재무제표에 반영된 것과 2009. 6. 30. 이후에 그 통상적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 외에는 어떠한 부외부채, 우발채무 또는 우발손실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매수인이 한길회계법인을 통하여 대상회사에 관한 2009. 6. 30. 기준 자산부채에 관한 실사를 하여 작성한 별첨 첨부5 대상회사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결과보고에서 기재된 사항은 제외하기로 한다.

9) 유형자산 대상회사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모든 중요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임차권 기타 적법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매도인 공개목록에 기재된 것 외에는 동 유형자산에는 어떠한 담보권 등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대상회사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모든 중요한 유형자산을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상태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대한 자본적 지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통상적인 수준의 유지보수 비용이거나 하자에 대해서 계약상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대상회사는 그 소유 및 사용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현재 영위되고 있는 영업활동을 위하여 소유, 사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중요한 권리, 권한 및 정부승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부동산은 현재 등록 또는 신고된 사용목적에 따라 중요한 점에서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고, 제3자의 부동산을 침범하거나 제3자의 부동산이 이를 침범하고 있지 아니한다.(중략)

(2) 매도인들은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매도인들, 대상주식, 대상사채 또는 대상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 및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제8조(면책 및 손해배상)

(1) 본 계약의 각 당사자("배상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중략)

- 1) 본 계약상 배상당사자의 진술 및 보증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 2) 배상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사항 기타 의무를 위반, 불이행하거나 지체한 경우

(2) 본 계약서 제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및 법상 각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제반 손해배상책임은 누적 기준으로 동 매도인이 수취한 매매대금의 5%를 한도로 하고, 동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은 무효로 한다.(중략)

(3) 모든 손해배상의 청구는 거래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상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이루어져야 하며, 위 기간 동안에 청구되지 아니한 모든 손해배상의 권리 및 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이하 생략)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제공한 서류 등

- 1) 피고 튜브다산 등이 원고에게 2009. 6.경 제공한 대상회사에 대한 투자제안서(IM, Information Memorandum, 갑 제6호증)에서는 대상회사의 신공장에 관한 현황을 소개하면서 '설계생산용량 : 10,000톤/연, 최대 생산용량 13,000톤/연'으로 기재하고 있다.
- 2) 피고 튜브다산 등이 원고에게 2009. 7.경 제공한 대상회사 소개자료(갑 제7호증)에도 '대상회사의 생산량'에 관하여 1만 톤으로 기재하고, 경영목표를 소개하는 부분에서도 '공장생산용량'을 '13,000톤[연간 풀(full) 생산용량]'으로 기재하고 있다.
- 3) 피고 튜브다산 등이 2009. 7. 20. 원고에게 제공한 '가격전략 관련 자료(갑 제8호증)'에는 '원고가 대상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톤당 230만 원 × 1만 톤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함. 즉 연간 230억 원의 효과가 발생함. 연간 생산량이 1만 톤 이상 늘어나거나 가격 스프레드(spread)가 23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플러스 요인. 연간 생산량이 1만 톤 이하이거나, 가격 스프레드가 230만 원 이하인 경우 마이너스 요인임. 대상회사의 최대 생산량은 연간 1만 5,000톤 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4) 기술보증기금이 2008. 6. 27.자로 대상회사의 '폴리부텐-1 중합체 및 이의 고활성 제조방법' 기술 특허에 관한 사업성평가를 하여 작성한 기술평가서(갑 제9호증)의 '평가요약 및 종합의견'란에는 '대상회사는 현재 폴리부텐-1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단계에 있으며, 본격적인 상업 생산을 위해 연산 10,000톤 규모의 생산설비를 건설 중에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하에서도 이를 기초로 기술성, 사업성 등을 판단하고 있다.

마. 원고의 이 사건 주식 등 매각

- 1) 원고는 피고 튜브다산 등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 등을 2012. 8. 7.경 주식회사 휴켄스, 주식회사 정산(이하 위 두 회사를 '휴켄스 등'이라 한다)에 매각하였다. 원고는 휴켄스 등과 사이에 대상회사 주식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4조 에스크로

4.1. 제3.2조 제3항에 따라서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42억 원은 거래종결일로부터 1년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되며(이하 '제1예치금'), 30억 원은 거래종결일로부터 18개월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다(이하 '제2예치금')

4.2. 본 계약 제8.12조와 관련하여, 매도인(원고)이 거래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상회사의 폴리부텐-1 생산능력이 연간 1만 톤 이상에 달하게 되는 경우 제1예치금(이자 포함)은 매도인이 즉시 이를 인출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 대상회사의 폴리부텐-1 생산능력이 그에 달할 때 까지 제1예치금의 예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8.1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 또는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위 제1예치금의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고, 잔존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매도인이 인출할 수 있다.

8.12. 생산능력 매도인은 거래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상회사의 폴리부텐-1 생산능력이 연간 1만 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원고는 거래종결일 이후 1년 동안 대상회사의 생산능력이 연간 1만 톤 이상이라는 점을 휴켄스 등에 확인시켜주지 못하였고, 2014. 1. 3. 대상회사의 생산능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만톤 프로젝트 완료에 따른 합의서

원고, 휴켄스 등 및 대상회사는, 대상회사의 폴리부텐-1 생산능력 연간 1만 톤 프로젝트의 완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프로젝트 완료사항)

2013. 10. 1.만 톤 프로젝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계약용량 대비 연 8,500톤 생산규모로 1,500톤 미달함.
- ▶ V/M 수준이 약 2800ppm으로 1500ppm에 미달함.
- ▶ 인허가 요건상 8,500톤이 생산용량임.
- ▶ 총 투자비 : 32.9억 (이하 생략)

3) 한편, 대상회사는 여수시 소재 공장의 고압가스 처리와 관련하여 1-Butene 또는 액화가스 처리능력을 1일 당 24톤으로 한 제조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11. 26.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1782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대상회사의 생산설비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를 하였고, 위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은 이전 소송과 당사자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완전히 같고, 원고가 형식적으로 다른 소송물을 내세워 이전 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므로, 이전 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 효력의 기판력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가사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이 이전 소송과 다르기 때문에 이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일인 2009. 9. 11.부터 6개월이 도과하기 전인 2010. 3. 9.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의 통지를 하고, 2010. 11. 26.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전 소송에서 대상회사의 생산설비에 하자가 존재하고, 이는 '중요한 유형자산에 관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상태 및 기능을 유지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진술 및 보증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포함하여 파일럿 플랜트 기계장치 과대계상과 신공장수선비 및 자본적 지출 등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 ② 이전 소송은 2011. 6. 1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1. 7. 29.까지 6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고, 피고들은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1. 7. 29.까지 6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이전 소송은 대상회사의 유형자산인 생산설비가 누수·파손 등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설비의 수리·교체 등으로 인한 수선비 등 자본적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 소송은 대상회사의

설비의 하자 없는 상태대로의 생산능력 자체가 피고들이 계약 당시 밝힌 것에 미달한다는 점에 관한 것인 점, ② 이전 소송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은 피고들과 원고 쌍방이 공통으로 착오를 하였거나,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한 기계설비의 생산능력 미달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충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이전 소송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마찬가지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난방용 플라스틱 파이프 등 건설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폴리부텐-1은 그 원자재에 해당하므로 수직계열화를 하여 원자재 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대상회사를 인수한 것이고 대상회사가 연간 1만 톤 이상의 폴리부텐-1 생산능력을 가진 신공장을 준공한 것은 대상회사 인수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은 대상회사의 폴리부텐-1 연간 생산능력이 최소한 1만 톤 이상인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으나, 대상회사의 실제 생산능력은 연간 최대 8,500톤에 불과하였다. 주위적으로, 원고가 대상회사의 생산능력에 대하여 잘못 인식한 것은 피고 튜브다산 등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이거나 피고들 역시 대상회사의 생산능력을 잘못 인식한 쌍방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대상회사의 연간 폴리부텐-1 생산능력에 관하여 착오가 없었다면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적으로 해석하여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야 하고, 대상회사의 생산능력이 연간 1만 톤 이상이라는 점이 대상회사의 장래 매출추정 등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이상 1만 톤에 이르지 못하는 점을 당사자들이 계약 당시 알았다면 매매대금을 보다 낮게 책정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전체 매매대금은 32,207,941,440원이 아니라 최소한 15%에 해당하는 4,831,191,216원을 감액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위 4,831,191,216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튜브다산 등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4,831,191,216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위 각 피고별로 원고에게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튜브다산 등의 기망 내지 위 피고들에 의해 유발된 착오에 의하여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최소 15%가량(4,831,191,216원) 과다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매매대금 4,831,191,216원 부분을 일부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튜브다산 등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매매대금 4,831,191,216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위 각 피고별로 원고에게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스틱17호	16,104,000,000	2,928,000,000	19,032,000,000	59.1%	2,855,234,009
피고 튜브다산	1,464,014,640		1,464,014,640	4.5%	217,403,604
피고 튜브마이더스	8,784,000,000	1,464,000,000	10,248,000,000	31.8%	1,536,318,807
피고 A	731,926,800		731,926,800	2.3%	111,117,398
피고 B	732,000,000		732,000,000	2.3%	111,117,398
합계	27,815,941,440	4,392,000,000	32,207,941,440	100%	4,831,191,216

또한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 에이치비는 피고 튜브다산 및 튜브마이더스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위 각 피고들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 스틱인베스트먼트는 피고 스틱17호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위 피고의 채무에 대하여 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무한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피고 에이치비는 피고 튜브다산, 튜브마이더스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 스틱인베스트먼트는 피고 스틱17호의 채무에 대하여 각자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스틱17호	2,855,234,009	피고 스틱인베스트먼트	2,855,234,009
피고 튜브다산	217,403,604	피고 에이치비	1,753,722,411
피고 튜브마이더스	1,536,318,807	피고 에이치비	

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218620 판결,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다산튜브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한 위 피고들이 제시한 투자제안서 등의 서류에는 대상회사의 폴리부텐-1 연간 생산량을 1만 톤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대상회사의 폴리부텐-1 실제 생산량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8,500톤가량인 사실은 앞서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이후 공시한 중요자산 양수도결정 주요사항보고서에 대상회사의 폴리부텐-1 생산능력에 관해 '연 1만 톤 규모'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후 대상회사 매각을 추진하면서 2012. 3.경 작성한 기업설명회(IR) 자료에도 대상회사의 연간 생산능력에 관하여 10,000톤(최대 15,000톤)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대상회사의 폴리부텐-1 생산량이 연간 1만 톤이라는 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전제 내지 기초가 되었고, 원고와 피고 다산튜브 등이 대상회사의 폴리부텐-1 생산능력에 관한 공통의 착오에 빠져 매매대금을 정하였다거나, 만약 원고와 피고 다산튜브 등 쌍방이 대상회사의 폴리부텐 생산량이 연간 8,500톤가량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더라면 감액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였을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와 피고 다산튜브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이 대상회사의 폴리부텐-1 생산능력에 대한 착오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과부족금액을 추가로 청구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주식과 전환사채를

목적물로 하여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기업 M&A 계약을 그 본질로 하고 있음에도 원고와 피고 다산튜브 등은 앞서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진술 및 보증조항'에서 대상회사의 설비에 하자가 없음을 위 피고들이 보증하는 외에 폴리부텐-1 연간 생산량에 관하여는 어떠한 기재도 한 바 없다.

㉔ 특정 회사 혹은 설비의 생산능력은 해당 설비의 객관적 성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운용 인력의 경험이나 능력, 관련 시장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대상회사의 폴리부텐-1 생산능력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확정적 수치로써 제시되거나 합의된 바가 없다. 한편, 피고 다산튜브 등이 원고에게 제시한 서류들에 반복적으로 폴리부텐-1 연간 1만 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㉕ 위 각 서류 중 투자제안서(갑 제6호증)에서는 '5년 프로젝트'이라는 제목 하에 2009년에는 5,417(최대 생산용량), 4,167(설계 생산용량), 2010년 및 2011년에는 각 13,000(최대 생산용량), 10,000(설계 생산용량), 2012년 및 2013년에는 각 39,000(최대 생산용량), 30,000(설계 생산용량) 등 미래에 관한 예상수치로서 기재되어 있는 점, ㉖ 마찬가지로 대상회사 소개자료(갑 제7호증)에도 '경영목표' 및 '사업추진계획'이라는 제목 하에 1만 톤의 수치를 제시하고 있고, 39쪽에서는 '국내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생산량을 1만 톤 규모로 증설할 필요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㉗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서(갑 제9호증)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9. 9.경보다 1년 전인 2008. 6. 27.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 점, 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당시 대상회사의 공장은 건설중이었거나 가동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확정적인 생산물량을 파악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다산튜브 등이 원고에게 제공한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수치는 미래에 대한 예정 내지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이로써 그것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전제 내지 기초가 되었다거나 피고 다산튜브 등에게 그에 대한 보장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㉙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원고 직원으로서 참여하였던 증인 C은 당시 원고측에서 피고측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외에 원고가 자체적으로 대상회사나 공장설비에 관하여 자료나 정보를 확인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한길회계법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09. 8.경

작성한 대상회사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결과보고서(갑 제15호증, 위 보고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첨부되어 있기도 하다)에는 오히려 '공장은 2009. 6. 20.부터 본격 가동되었으나 생산능력(연간 10,000톤)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상태로 생산량 대비 제조원가 중 노무비와 경비 비중이 과다하게 배분됨으로 인하여 장부상 제품재고금액이 과도하게 계상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다산튜브 등에게 대상회사의 폴리부텐-1 연간 생산량이 1만 톤 이상인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후 제기한 이전 소송에서도 이 부분에 관하여 주장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대상회사를 휴켄스에 매각할 때에는 대상회사의 폴리부텐-1 생산량이 1만 톤 이상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질이 단순설비 매매계약이 아니라 대상회사에 관한 M&A였던 이상, 가사 기계설비의 생산능력에 관한 쌍방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다산튜브 등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원고의 주장대로 폴리부텐-1의 생산량 만에 비례하여 감액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폴리부텐-1은 대상회사 이전에는 해외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는 원자재였으나 대상회사가 특허기술을 통해 폴리부텐-1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원고는 이러한 대상회사를 인수함으로써 폴리부텐-1 등 원자재 수급을 원활히 하는 수직계열화를 하고자 하였던 점, 원고가 대상회사를 휴켄스 등에 매각하기 전까지 원고의 대상회사 운영으로 인한 손익분기점의 기준이 되는 폴리부텐-1 생산량이 연간 1만 톤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전형적인 사법상의 계약으로, 그 대금결정 기준에 관하여 사전에 제시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고, 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하여 매매대금이 결정되었다.

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 다산튜브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원고에게 제시한 투자제안서, 기술평가서 등에 대상회사의 폴리부텐-1 연간 생산량이 10,000톤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위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상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대상회사의 연간 폴리부텐-1 생산량이 10,000톤 이상이라는 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동기로 삼았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원고가 대상회사의 연간 폴리부텐-1 생산량이 10,000톤임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데, 앞서 든 각 증거를 포함한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다산튜브 등에게 위와 같은 동기를 표시하였거나 그러한 표시가 피고 다산튜브 등의 강력한 주장 등으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가사 그러한 착오가 표시되었거나 피고 다산튜브 등의 적극적 행위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 대상회사의 폴리부텐-1 생산량만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일부 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거나 그러한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고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명시되지조차 않은 대상회사의 폴리부텐-1 연간생산량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의 일부에 관해 취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전지원

판사어준혁

판사김초하